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개인연금채권혼합투자신탁모신탁(S-1호)

2. 주요 변경내용 : 주식 취득 예외조항 신설

3. 변경시행일 : 2017년 05월 12일

4. 대비표

[약관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5조(투자신탁 운용의 제한)	제1항 ~ 제3항 (생략) <신설>	제1항 ~ 제3항 (생략, 현행과 동일) ④ 본조 제1항제7호 및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,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다.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글로벌 스마트 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 : 모투자신탁의 주식 취득 예외조항 반영

3. 변경시행일 : 2017년 05월 12일

4. 대비표

[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<추가>	**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7년 05월 12일 모투자신탁의 주식 취득 예외조항 신설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**나. 모집합투자기구** **-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채권]** (1) 투자대상 <추가>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**나. 모집합투자기구** **-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채권]** (1) 투자대상 ※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투자대상 및 투자비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,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재형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 : 모투자신탁의 주식 취득 예외조항 반영

3. 변경시행일 : 2017년 05월 12일

4. 대비표

[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<추가>	**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7년 05월 12일 모투자신탁의 주식 취득 예외조항 신설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**나. 모집합투자기구** **-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채권]** (1) 투자대상 <추가>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**나. 모집합투자기구** **-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채권]** (1) 투자대상 ※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투자대상 및 투자비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,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뉴개인연금채권투자신탁(S-1호)

2. 주요 변경내용 : 주식 취득 예외조항 신설

3. 변경시행일 : 2017년 05월 12일

4. 대비표

[약관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7조(투자신탁 운용의 제한)	제1항 ~ 제3항 (생략) <신설>	제1항 ~ 제3항 (생략, 현행과 동일) ④ 본조 제1항제7호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,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다.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(제1호)[채권]

2. 주요 변경내용 : 모투자신탁의 주식 취득 예외조항 반영

3. 변경시행일 : 2017년 05월 12일

4. 대비표

[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<추가>	**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7년 05월 12일 모투자신탁의 주식 취득 예외조항 신설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**나. 모집합투자기구** **-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채권]** (1) 투자대상 <추가>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**나. 모집합투자기구** **-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채권]** (1) 투자대상 ※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투자대상 및 투자비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,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1호)[채권]

2. 주요 변경내용 : 주식 취득 예외조항 신설

3. 변경시행일 : 2017년 05월 12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	<신설>	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,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다.

[변경등록신청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<추가>	**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7년 05월 12일 주식 취득 예외조항 신설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 주3)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)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(www.kofia.or.kr)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<추가>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※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투자대상 및 투자비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,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(제1호)[국공채]

2. 주요 변경내용 : 주식 취득 예외조항 신설

3. 효력발생(예정)일 : 2017년 05월 12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7조 (투자대상 자산 등)	제1항 ~ 제3항 (생략) <신설>	제1항 ~ 제3항 (생략, 현행과 동일)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,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다.

[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<신설>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※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투자대상 및 투자비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,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코리아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 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 : 모투자신탁의 주식 취득 예외조항 반영

3. 변경시행일 : 2017년 05월 12일

4. 대비표

[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<추가>	**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7년 05월 12일 모투자신탁의 주식 취득 예외조항 신설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**나. 모집합투자기구** **-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채권]** (1) 투자대상 <추가>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**나. 모집합투자기구** **-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채권]** (1) 투자대상 ※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투자대상 및 투자비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,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블루칩바스켓 증권투자신탁(V-1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7년 05월 12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7년 05월 12일 -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**1.재무정보** (생략)	**1.재무정보** 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